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와 그 한계

이 용 호*

I. 서언

재래식무기라고 힘은 전쟁법상의 해적수단인 제무기 중에서도 핵무기와 생물·화학무기 등 이른바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이를테면 종래부터 무력충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무기를 지칭한다.

이러한 재래식무기에 대한 사용규제는 크게 교전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규제와 특정조약에 의한 규제로 양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원칙", "무차별공격의 금지원칙", "배신행위금지원칙", "Martens조항", "교전자는 해적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일반원칙 및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 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그러한 것이 예측될 수 있는 전투수단의 사용은 금지 된다"라는 원칙 등 무기사용의 규제에 관한 교전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특정 무기의 사용을 당연히 금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의한 특정무기의 사용규제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발달된 현대 과학기술의 군사적 이용이라는 측면과 무력충돌의 성질·특징에 기인한 해적수단·방법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해, 혼돈하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는 교전법상의 일반원칙을 특정무기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가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것처럼, 교전법상의 일반원칙은 비단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뿐 아니라 장래 사용될 무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동시에 해적수단의 규제를 위한 일반적 지침 내지 지도원리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반원칙의 존재만으로써 특정무기의 사용이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적수단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규제대상인 무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특별규칙의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무기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그러한 무기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약의 체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기의 규제문제는 본질적으로 각국의 전략적·군사적·정치적 이해와 항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기사용을 규제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 또한 내재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특히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특정의 재래식무기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¹⁾ 약간의 조약을 체결하여 왔던 바, 1868년의 400g 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의 금지에 관한 "St. Petersburg 선언"·1899년의 "담담탄의금지선언"·1907년의 "자동촉발機雷의부설에관한협약"·1980년의 "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또는제한에관한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이하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 또는 Inhumane Weapons Convention이라 약칭함)·1997년의 "대인지뢰금지협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

1)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는 전면적 사용금지의 방식(특정 무기 자체를 위법화함으로써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과 사용의 형태를 제한하는 방식(무기의 일정한 사용형태만을 위법화함으로써 그러한 형태의 사용만을 금지하는 방식)이 존재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양자에 관한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를 다루고자 한다.

약의 체결은, 19세기 이래 거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재래식무기분야에서의 하나의 큰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이상과 같이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분야에 있어서의 조약화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본고에서는 다음의 2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재래식무기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제조약의 내용을 정리·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장차 보다 효과적인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상기의 제조약상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와 그 한계

재래식무기의 사용을 일괄해서 금지하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특정의 재래식무기는 그 사용이 금지된다.

1. 400g 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의 금지에 관한 "St. Petersburg선언"

1868년의 St. Petersburg선언에서는 "400g 이하의 작열성, 폭발성 또는 소이성 물질을 충전한 발사물"을 육군 또는 해군에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400g 이하의 폭발물이라고 할지라도 발사물(탄환)이 아닌 수류탄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또한 400g 이상의 폭발성 발사물의 경우에는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동 선언은 400g 이하의 폭발성 발사체의 사용으로 인해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함을 방지하고 또한 아울러 무의하게 전투원을 살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채택되었지만, 상술한 것처럼 동 선언상의 금지범위가 극히 한정적이라는 점과 그나마 총가입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²⁾.

2) 藤田久一, 國際人道法, 有信堂, 東京, 1993, 93면.

2. "담담탄의금지선언"

1899년 Hague평화회의에서 채택된 담담탄(작열성탄환)금지선언은 "총탄의 중심부를 외포로써 완전하게 덮지 않거나 또는 외포에 자국을 새겨둠으로써 인체내에서 쉽게 파열되거나 납작하게 되어 인체내의 상처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갖는 탄환(담담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³⁾.

동 선언은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케 하기 위한 인도적 고려와 담담탄의 탄도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총기의 손상이 용이하다는 군사적 이유에 기인하여 채택되었지만, 총가입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체약국이 대부분 서구제국에 한정됨으로써⁴⁾ 사실상 문명국간의 전쟁에서만 동 선언의 적용이 예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자동촉발機雷의부설에관한협약"

1907년 Hague평화회의에서 체결된 자동촉발기뢰의부설에관한협약은 해전에 있어서 해적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기뢰의 부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1시간이내에 무해로 되지 않는 무계류 자동촉발기뢰, 계류를 벗어난 후 즉시 무해로 되지 않는 계류자동촉발기뢰, 불명중시 무해로 되지 않는 어형수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3) 여기서 담담탄(dum-dum bullets)이란 작열성 탄환을 영국이 제조한 인도의 지명에서 유래되었다(Ingrid Detter De Lapis, *The Law of War*, Cambridge Univ. Press, New York, 1989, p.178).

4) Hague평화회의에서 미국이 담담탄 및 기타 등종의 효과를 갖는 탄환을 포괄적으로 금지시키고자 하는 일반적 금지규정방식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담담탄만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초안이 기초되었기 때문에, 동 선언에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영국과 포르투칼도 1907년까지 동 선언에 가입하지 않았던 바, 이는 Hague평화회의에서 양국의 "야만인과의 전쟁에서는 담담탄을 사용하자"라는 주장에 대해, 그 당시 동 평화회의가 상기 양국의 주장을 거부(그 당시 적이 야만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발사물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하였기 때문이다(藤田久一, 앞의 책, 93-94면).

그러나 동 협약 제6조(완전한 기뢰를 갖지 못한 체약국은 조속히 기뢰를 개량할 것을 약정한다)에 의해, 체약국은 자국의 기술 부족을 빌미로 상기의 의무를 회피할 위험성이 있다⁵⁾.

4.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후술)

5. "대인지뢰금지협약"

1) 성립배경

오늘날 대인지뢰는 무려 1억 1천만개나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러한 지뢰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년간 약 25,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⁶⁾. 따라서 대인지뢰로부터 민간인 희생자를 보호하는 문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되어 왔으며, 이에 대인지뢰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 UN총회는 "대인지뢰의 수출정지결의안(UNGA Res. 48/75K)"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1996년 5월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의 제2의정서(지뢰 등의 일반주민에 대한 무차별적 사용을 금지)를 개정(후술)하여 대인지뢰를 포함한 지뢰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의정서만으로는 지뢰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국제지뢰철폐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을 비롯한 NGO들과 캐나다·오스트리아 등 일련의 국가들의 지속적 지뢰철폐노력으로 인하여 마침내 1997년 9월 18일 Oslo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체결되었다⁷⁾.

5) 정운장, 국제인도법, 영남대출판부, 경북, 1994, 268~269면.

6) 임덕규, "대인지뢰의 국제법적 규제와 한국의 현실",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제2호, 1997.12, 163~164.

7) 대인지뢰금지협약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두된 대인지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국제여론을 바탕으로, Ottawa회의(1996.10.3 ~ 5)·동경회의(1997.3)·Brusel회의

2) 주요내용과 의의

동 협약은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대인지뢰의 개발, 생산, 비축, 취득, 보유, 이전 및 사용의 포괄적 금지이다(동 협약 제1조 1항).

둘째 동 협약의 발효 후 4년 이내 기존 비축된 대인지뢰의 폐기 및 10년 이내 매설된 지뢰의 제거, 국가 위기시 6개월 전 통고 후 탈퇴, 기타 구체적 이행절차, 지뢰정보의 공개 및 지뢰폐기계획서의 제출 등이다.

이처럼 동 협약의 채택은 기존의 국제인도법의 제조약에 비하여 단기간에 채택되었다는 점, 전투수단의 규제에 대하여 국제인도법 차원에서 접근하여 특정 재래식무기의 전면적 금지를 최초로 도출하였다는 점, 기존의 군축조약 내지 Hague법이 체약국간의 타협을 통한 컨센서스에 의해 조약을 채택한 반면에 동 협약은 채택을 원하는 국가들만의 합의에 의하여 조약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⁸⁾.

3) 한계

동 협약의 채택과정에서 군사강대국의 일부가 협약채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탈한 것은 동 협약의 이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동 협약에 많은 국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페키스탄 등 주요 강대국 또는 지뢰생산국이 불참함으로써 실질적 효력이 의문시되는 정치적 성격의 국제협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⁹⁾

(1997.6) 동의 일련의 회의 및 1997년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Oslo회의에서의 최종 토의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그후 동 협약은 1997년 12월 3일부터 4일 까지 Ottawa에서 그리고 동년 12월 5일에는 New York의 UN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1998년 12월 현재 미발효(발효요건은 40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6개월 후)상태이다(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8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ipri,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98, p.597).

8) 임태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관한 일고찰", 인도법논총, 제18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8, 246면.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예외적 상황(즉 북한의 호전적 군사정책이라는 특수성, 수도방위의 절대성 및 지뢰의 사용을 통한 남침의 효과적 차단과 반격 시간의 확보라는 군사적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뢰사용의 전면금지에 반대하고 한반도를 예외적 지역으로 인정하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이 예외를 不許하는 전면적 금지규정을 두며 또한 유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를 동 협약에 가입 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이다¹⁰⁾.

III.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의 발달과 한계

1. 성립 배경

상술한 담담탄의금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산탄총, 400g 이하의 수류탄 및 고속도탄환 등 담담탄 이상의 살상효과를 가지는 무기가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그 허용성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후 재래식무기에 대한 허용성 여부는 주로 소이성 무기¹¹⁾에 집중되었으며¹²⁾, 특히 소이성 무기의 일종인 네이팜(napalm)¹³⁾ 허용성 여부가 주요한 논쟁의

9) 임덕규, 앞의 논문, 168면.

10) 앞의 논문, 173면.

11) 소이성 무기라 함은 물질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화염작용, 열작용 또는 이들의 복합작용을 통해 물체에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된 무기 또는 탄약류를 지칭한다. 이러한 무기로서 대표적인 것은 네이팜(napalm)을 들 수 있다.

12) 국제연맹당시의 군축회의에서 채택한 군축조약안 제49조에서는 소이성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연맹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소이성 무기의 사용을 위법 시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연합군측이 소이성 무기에 의한 공중폭격을 감행하면서, 소이성 무기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藤田久一, 앞의 책, 94면).

13) 네이팜은 소이성 무기의 일종으로서 화발유를 소이체로 하고 있으며 염화수소를 첨부한 특별한 제제이다. 폭발에 의해 8천도에 달하는 소화불능의 화재가 발생하며, 산소를 결핍시켜 질식상태를 만들며, 그밖의 연소생성물의 독소효과를 수반한다. 일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사실 국제사회는, 베트남전쟁을 통해서, 네이팜이 경작지와 삼림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회생태학적 변화까지 야기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비인도적이며 불필요한 고통을 주며 또한 무차별적 고통을 주는 네이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네이팜과 기타 소이성 무기에 관한 UN사무총장의 보고서¹⁴⁾ 및 총회결의를¹⁵⁾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고도로 발달된 재래식무기(네이팜 및 소이성 무기 포함)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말엽에 등장한 원자탄의 전략적 가치에 밀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던 재래식무기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표현으로써, 그러한 움직임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반영하여, 특정 재래식무기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게 되었던 바, 그 사용문제는 국제인도법 외교회의의 Ad Hoc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 동 위원회는 ICRC에 의하여 별도로 개최된 2차례 결친 전문가회의(1974년에 Luzern과 1976년 Lugano에서 각각 개최됨)¹⁶⁾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심도있는 토의를 벌였지만, 재래식무기의 규제에 관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제국 및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제국의 소극적 자세에 부딪혀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동 외교회의의 결의(결의 22, IV)를 통해, 재래식무기에 관한 UN전권회의의 소집을 권고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반적으로 네이팜은 대인살상용 또는 대재벌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14) 동 보고서에서는 "네이팜 및 소이성 무기는 인류에 극히 큰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잔인한 무기이며, 무차별적 특성에 비추어 그 사용·생산·개발·비축의 금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Napalm and other incendiary weapons and all aspects of their possible use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der GA resolution 2852(X VI), 1972, A/8803).
- 15) 일련의 UN총회 결의에서 네이팜과 기타의 소이성 무기를 무력충돌에 사용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UNGA Res. 2932A(X VII), 3032(X X VII), 3076(X VIII) 참조].
- 16) 동 회의에서는 소이성 무기·소구경투사물·파쇄성 무기·지발성 무기·기만성 무기·그밖의 무기 및 신무기에 관한 법적·기술적·군사적 측면의 검토가 있었다(藤田久一, 앞의 책, 95면).

이에 따라, 특정 재래식무기의¹⁷⁾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UN전권회의가 1979년 9월 및 1980년 9월 – 10월에 각각 개최되었으며, 1980년 10월 10일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 및 이것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3개의 부속의정서가 채택되었다¹⁸⁾.

그후 "동 협약에 대한 제1차 재검토회의"(the first Review Conference of the 1980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의 제1회기(1995.9.25–10.10, Vienna)를 통해, 1995년 10월 13일 새로운 제4부속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또한 동 재검토회의의 제2·3회기(1996.1.15–1.19 및 1996.4.22–5.3, Geneva)를¹⁹⁾ 통해, 1996년 5월 3일 제2부속의정서에 대한 개정안이 채택되었다²⁰⁾.

2. 주요내용과 한계

동 협약은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을 두고 있고, 직접적으로 사용의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 무기에 관해서는 동 협약에 부속된 4개의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동 협약에서는 그에 비준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최소한 2개의 부속의정서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비준 또는 가입하여야 하며(동 협약 제4조 3항), 사후 어느 때라도 나머지 부속의정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협약 제4조 4항). 동 조약이 이러한 형태를 취한 이유는 동 협약 및 부속의정서를 조속하게 성립시키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써, 특정의 의정서가 요구되는 비준을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비준을 얻은 기타의 의정서만이라도 동 협약과 함께 효력

17) 특정 재래식무기라 함은 재래식무기 중에서도 그 성질상 특히 불필요한 고통 또는 과다한 상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유형의 무기를 말한다.

18) 동 조약은 1981년 4월 10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1983년 12월 2일 발효되었다.

19) 동 회기에서는 대인지뢰문제와 제2부속의정서의 개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Louise Doswald-Beck, "New Protocol on Blinding Laser Weapon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312, 1996.5–6, p.272).

20) Ibid.

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또한 동 협약에서는 "본 협약과 부속의정서에 대한 개정의 제안" 및 "현행 부속의정서에 의하여 취급되지 아니한 기타 범주의 재래식무기에 관한 의정서의 추가적 제안"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안과 추가적 부속의정서의 채택 및 효력의 발생은 본 협약 및 부속의정서의 채택 및 효력의 발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동 협약 제8조).

1) "탐지불능성쇄편무기의사용금지의정서"

(Protocol on Non-Detectable Fragments, 1980년, Protocol I)

동 의정서에서는 X-선에 의하여 인체내에서 탐지될 수 없는 쇄편으로써 상해를 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는 군사적 효과가 작은 데 비하여 부상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시키는 해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무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 의정서는 말하자면 예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²¹⁾.

2) "지뢰및위장성무기의사용규제에관한의정서"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Mines, Booby-Traps and Other Devices, 1980년, Protocol II)

동 의정서는 지뢰, 위장성 무기(booby-traps)²²⁾ 및 기타 유사한 장치물 등의 일반주민에 대한 무차별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이들 무기가 합법적

21) 藤田久一, 앞의 책, 96면.

22) 위장성 무기(booby-traps)란 외관상 무해한 물체를 누군가가 움직이거나 또는 그 것에 접근해서 전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 갑자기 작동하여 본래의 기능을 행하는 물체로서, 살상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구성되고 이용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폭발성 물질을 내장한 체 외관상 무해한 것으로 보이는 것, 즉 국제보호표장·의료시설기구·완구·음식물 등에 폭발성 물질을 내장한 경우이다.

임을 인정하면서, 단지 그 무차별적 사용으로부터 민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의 사용형태를 규제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²³⁾.

3) "소이성무기의 사용제한의정서"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Incendiary Weapons, 1980년, Protocol III)

동 의정서에서는 상술한 제2의정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기의 일정한 사용형태를 규제하고 있다. 즉 다음의 경우에는 소이성 무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첫째 민간주민 전체, 개개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2조 1항), 둘째 인구밀집지역내에 위치한 군사목표를 공중투하 이외의 방법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제2조 2항), 셋째 삼림과 식물군락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제2조 4항) 등이다.

4) "실명성레이저무기의정서"

(Protocol on Blinding Laser Weapons, 1995년, Protocol IV) (후술)

3. 제4의정서(Protocol IV)의 채택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에 대한 제1차 재검토회의를 통해, 1995년 10월 13일 제4부속의정서(실명성레이저무기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는 지난 1980년에 3개의 부속의정서(상술)가 채택된 아래, 약 15년만의 일로서 ICRC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²⁴⁾.

23) 과다한 상해나 또는 무용한 고통을 야기하도록 설계된 위장성 무기의 사용 금지(제6조), 지뢰 등의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사용 금지(제4조), 원거리발사지뢰인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군사목표인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제5조) 등이다.

24) Louise Doswald-Beck, op.cit., pp.272-273.

1) 주요내용

영구실명을 야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레이저무기의²⁵⁾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동 부속의정서는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초안에는 모든 레이저무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물용레이저무기의 군사적 가치를 강조하는 일부 군사선진국의 반대로 인하여, 그 내용이 완화되었던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맨눈이나 또는 교정용시력장치를 끈 눈을 영구적으로 실명시키기 위해²⁶⁾ 특별히 전투용 또는 전투용의 하나로 고안된 레이저무기의 사용은 금지되며, 각 체약국은 이러한 무기를 어떠한 국가나 또는 비국가실체에 양도하여서는 안된다(동 부속의정서 제1조). 즉 동 부속의정서 제1조에서는 대인용레이저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레이저체계의 사용에 있어서, 각 체약국들은 맨눈이나 또는 교정용시력장치를 끈 눈을 영구적 실명으로 이르게 하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군대의 훈련 및 기타 실제적 조치를 포함함)를 취하여야 한다(동 부속의정서 제2조).

셋째 레이저체계의 합법적인 군사적 사용(광학장비에 대해 사용되어지는 레이저체계를 포함한)으로부터 야기되는 우발적 또는 부수적 실명은 본 부속의정서의 금지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동 부속의정서 제3조)²⁷⁾.

2) 한계

25) 레이저무기란 소리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光線무기로서, 사람의 시력을 의도적으로 상실시키는 무기형태(대인용레이저무기)와 적군의 각종 광학무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군사목표의 정확한 선정 및 보다 정밀한 사거리측정 등을 위한 무기형태(대물용레이저무기)가 있다. 이를 무기를, 전투원의 시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면, 영구실명자는 전체부상자의 약 5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운장, "재래식무기 사용규제분야의 당면과제", 인도법논총, 제19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면).

26) 본 부속의정서에서, 영구적 실명이란 둘이킬 수 없는 그리고 교정할 수 없는 시력의 손실을 의미한다(실명성레이저무기의정서 제4조).

27) Louise Doswald-Beck, op.cit., p.299.

일반적으로 재래식무기분야에 있어서의 규제는 이미 구형이 된 무기를 중심으로 행하여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부속의정서에서는 막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레이저무기, 즉 신형무기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부속의정서의 의의는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반면에 본 부속의정서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²⁸⁾.

첫째 동 부속의정서에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도 적용토록하는 명문규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인용레이저무기의 사용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원안의 내용보다 훨씬 후퇴하여 채택되었다는 점이다²⁹⁾.

4. 제2의정서(Protocol II)의 개정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에 대한 제1차 재검토회의의 제2·3회기를 통해, 1996년 5월 3일 제2부속의정서가 개정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1) 적용범위의 확대

원래의 제2부속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에만 적용토록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비국제적 무력충돌(내전)에도 확대적용된다는 것이다(동 부속의정서 제1조 2항).

(2) 이행조치

원래의 3개 부속의정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이행조치를 새로이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체약국간 본 부속의정서의 운용에 관한 상호 협의 및 협력의무(동 부속의정서 제13조 1항), 각 체약국의 연례보고서 제출의무·각 체약국에의 회람 및 체약국회의에서의 심의(동 부속의정서 제13조 3·4항), 본 부

28) Ibid., p.297.

29) Ibid., pp.287-288.

속의정서의 위반방지를 위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동 부속의정서 제14조 1항) 및 군대요원에 대한 교육의무(동 부속의정서 제14조 3항) 등이다.

(3)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동 부속의정서 제4조 - 제6조)

첫째 탐지불능의 대인지뢰의 사용은 금지된다.

둘째 자동파괴 및 자동무력화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대인지뢰의 사용은 금지된다. 단 대인지뢰 부설지역에 군요원이 감시를 하고 또는 올타리 등으로 보호되는 주변표시지역 내에 부설하는 경우 등은 그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자국군이 후퇴 또는 철수함으로써 그 지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인지뢰를 제거하여야 한다. 단 상기의 보호책임과 제거책임을 인수한 다른 군대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지뢰제거의무

지뢰를 부설한 체약국은 지뢰를 제거하여야 하는 바, 실질적 적대행위의 종료 후 자체없이 지뢰지대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술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UN 또는 국제기관에 지뢰제거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동 부속의정서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5) 기록의무

체약국은 미리 계획된 지뢰지대 뿐 아니라 모든 지뢰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6) 그밖에도 원거리발사지뢰는 그 위치를 기록하여야 하고,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효과적인 자동파괴 또는 자동무력화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특히 원거리 발사 대인지뢰의 경우, 이러한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한다(동 부속의정서 제6조 1항 - 3항). 또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는 UN군 및 인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동 부속의정서 제12조), 탐지불능성 지뢰의 이전금지와 국가 또는 비국가실체에 대한 지뢰의 이전금지(동 부속의정서 제8조)를 규정하고 있다.

2) 한계

개정된 제2부속의정서는 원래의 제2의정서 보다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대인지뢰개념의 불명확성, 구체적 검증규정의 결여 및 재원의 확보와 관련한 이행상의 문제점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³⁰⁾. 특히 예당초 요청되었던 대인지뢰의 사용 뿐 아니라 그 생산·저장 등의 전면적 금지에서, 재검토회의 과정에서의 난항 끝에 절충적 입장 즉 예외가 인정되는 원칙적 사용금지로 낙착되었다는 점은 무기규제분야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³¹⁾.

5. 한계

부속의정서에서 규제되는 무기의 종류가 극히 한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용금지는 제1부속의정서와 제4부속의정서에 의한 검출 불가능한 쇄편을 이용한 무기와 실명성레이저무기에 관해서는 절대적이지만, 기타 종류의 무기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면적 사용금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용을 합법화하는 역의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는 점이다.

특정 무기사용의 규제를 위한 노력을 현재 거의 일반화된 무기 또는 구형무기에 대하여서만 제동을 가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특정의 군사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무기 또는 앞으로 사용될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특정무기사용의 규제의 경우, 고도의 기술 및 자본을 갖는 선진국은 아무런 제동을 받지 아니하고 더욱 고성능의 새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규제대상의 범위로부터 쉽게 빠져 나가는 반면, 그와 같은 새 무기의 개발이 어려운 대다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만이 규제의 대상으로 남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기 쉽다는 것이다³²⁾.

30) 임태근, 앞의 논문, 232면.

31) 정운장, 앞의 논문, 18면.

32) 정운장, 앞의 책, 288~289면.

IV. 결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래식무기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그나마 기존의 법적 규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무기사용의 규제문제는 각국의 정치적·군사전략적 이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겠다. 특히 군사적 유용성이 매우 높은 고성능 재래식무기의 규제는, 당해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선진국이 자국 군사력의 정도를 규제하려는 어떤 제안도 수락하지 않을려고 한다는 사실과 자국의 군사적 안보를 위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고성능 무기를 도입하려 하거나 공급받고 있는 국가도 무기사용의 규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만큼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성능의 다양한 재래식무기가 개발되어 있다는 현실과 오늘날 각종 무력충돌에서 고성능의 재래식무기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건대, 재래식무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거나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갖는다고 의심이 가는 무기류에 대한 전반적 규제는 가능 절대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는 무력충돌로부터 희생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구경무기체계나 cluster무기 등 아직 규제되지 않고 있는 고성능무기류를 전반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는, 지난 재래식무기 통제과정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국간 신뢰를 회복하는 점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은 총체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각종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무기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의 고양은 그 만큼 국가간 신뢰를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무기의 해악을 전인류에게 알림으로써, 무기사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